

인 천 지 방 법 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512821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5. 12. 24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한동욱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3. 10. 23. 압류			배당요구종기	2025. 12. 1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 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 분	점유의 권 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박은서	전부	등기사항 전부증명서	주거 임차권자	2020. 12. 1.~	87,000,000		2020. 12. 1.	2020. 10. 12.		
주택도시 보증공사 (임차인 박은서)	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20. 12. 1.~ 2025. 2. 26.	87,000,000		2020. 12. 1.	2020. 10. 12.	2025. 11. 24.	
<비고> - 박은서: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. 11. 26. 임 - 주택도시보증공사(임차인 박은서): 경매신청권자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9호의 기관으로 임차인 박은서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.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약서를 제출함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을구 순위 5번 주택임차권등기(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약약서가 제출됨)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512821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120-43

대준맨션

에이동

[도로명주소]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337번길 11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

1층 11.70㎡

2층 137.03㎡

3층 137.03㎡

4층 137.03㎡

5층 137.03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5층503호

철근콘크리트조

42.27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120-43

대 201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201분의 17.65

감정평가액

86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

2026.01.07

86,000,000

8,600,000

2회

2026.02.10

60,200,000

6,020,000

3회

2026.03.25

42,140,000

4,214,000

4회

2026.04.24

29,498,000

2,949,800